

‘종군위안부 피해’ 인도적 배려

정부 구호조처 배경·의미

일제의 한반도 침탈사에서 가장 뼈저린 상처를 받았던 종군위안부. 국내외에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1백40명의 종군위안부에 대한 국내 보호조처가 29일 발표됐다.

정부가 발표한 구호조처는 실제 그 결정의 시급성을 따질 때 뒤늦었다고 하겠으나, 일제의 과거사 문제를 정부가 스스로 나서 정면으로 다룸으로써 민족의 자존심을 살리고 인도적인 배려도 병행하고자 하는 최초의 시도이자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작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또 종군위안부와 관련한 물질적 보상을 일본에 요구하지 않는다는 기왕의 방침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결국 생존 위안부를 국가 차원에서 구호하는 대신 철저한 진상규명을 일본쪽에 요구하는 것으로 요약되는 이 조처는 일본 정부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는 외교적 효과를 겨냥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새 정부가 이러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마음을 졸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

져온다.

일본 정부는 최근까지 일제의 관여사실 가운데 핵심사항인 종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생존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물질보상으로 무마해보려는 속셈을 드러내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정

게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면에서는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1백35명의 생존자에 대한 구호내용은 △생활보호기본금(일시지급) 5백만원 △매월 15만원의 생활지원금 △의료 무료혜택과 월 5만6천원씩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가능한 한의 지원 등이다. 외무부는 애초 1천만

의료 무료혜택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26만원 수준의 지원이며 이는 보훈대상자가 받는 월 28만원의 기본급에 거의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신대대책협의회 등 관련단체나 생존자들은 기왕 정부가 예산지원을 해줄 경우 전세방을 얻을 수 있는 1천만원 수준의 기본금을 주거나 아예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보장해주도록 희망해왔다.

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는 것이다.

종군위안부에 대한 보호결정은 일제의 비슷한 피해자인 근로정신대와 강제징용자 등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당연히 예정하고 있다. 외무부 당국자는 “종군위안부 보호조처를 먼저 다룬 것은 가장 반인륜적이고 해결이 시급했기 때문”이라며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예산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해결은 어려우나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 정부조처는 종군위안부 등 일제 피해자가 개인 또는 단체로 일본 법정에 제기해 놓고 있는 배상요구 소송 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개개인은 앞으로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무부는 그동안 국제법 차원에서 종군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를 검토해왔는데, 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법률 차원의 검토는 계속한다고 강조했다. 아무튼 생존 위안부에 대한 보호결정은 민족의 자존심을 스스로 지키고 일본쪽에는 성의있는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 만하다.

박종문 기자

진상규명 요구 일본 압박 실질적 도움 기대에 미흡

부간 물질보상은 제쳐두더라도 과거사를 제대로 파악해 공개하지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자, 일본내에서는 이 문제가 도덕성문제의 차원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으며 일본 정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생존 위안부 보호조처는 이런 함축적 의미를 가지면서도 정부 지원이 실질적으로 개개인에

원의 생활보호기본금과 일정액의 월 생활지원금 지급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내용으로 한 대책을 제시했으나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법규나 제도상의 제한 및 다른 국가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장애인 등)와의 형평을 이유로 이렇게 수정했다.

외무부는 기본금 5백만원에 대한 이자, 생활지원금, 주택입주,

그런데 관계부처들은 협의과정에서 이런 생존자들의 요망보다는 기존의 규정이나 제도의 틀 안에서만 이 문제를 다루는 좁은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많고 여러 계층이라는 점에서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특별법을 통해서 이런 조치를 하는 마당